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 1) 수분 : 15.0% 이하일 것
- 2) 벤조피렌(흑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흑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의 중금속 기준 중 중한 기준에 의할 것
- 4) 회분 : 5% 이하(미삼류의 경우에는 6.0% 이하)일 것
- 5) 농약잔류허용기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의할 것
- 6) 이물 : 인삼류는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세척 등으로 제거가 가능한 이물과 제조과정에서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 7) 보존료, 인공색소 및 표백제가 검출되지 아니할 것
- 8) 세균수: 50,000/g 이하이어야 하며,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일 것
- 9)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
- 10)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일 것
- 11) 인삼성분
 - 가)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닌)의 함량(%)

본삼류	대미·중미류 및 분쇄인삼	세미류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나) 묶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 : 18.0% 이상

12) 진세노사이드 함량

- 가) 흑삼을 제외한 인삼류: Rg1의 함량이 0.10% 이상이고 Rb1의 함량이 0.20% 이상일 것
- 나) 흑삼: Rg3의 함량이 0.10% 이상이고 Rk1 및 Rg5의 함량의 합이 0.20% 이상일 것

나. 개별검사기준

1) 연근검사

가) 검사항목

삼 종	검 사 항 목
홍 삼 · 태 극 삼 및 흑 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절삼, 절편삼, 분쇄삼 중에서 연근 판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연근(4년근)으로 판별할 수 있다]
백 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절삼, 절편삼, 분쇄삼 중에서 연근 판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연근(2년근)으로 판별할 수 있다]

나) 연근기준

연근검사의 기준은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이테 등을 육안 또는 발색시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연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근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2) 품질검사

가) 홍삼

(1) 직삼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① 체 형	머리	몸통 굽기와 비슷하며 건실한 것		
	몸통	길이 3.5cm 이상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	균열과 흠집이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이하	제한 없음
	다리	1개 이상 잘 발달되어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수분(%)		15.0 이하		
③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 밑 10mm 이하부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④색택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⑤표피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4 이하인 것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	황피·백피 또는 옹피 등이 전체표면적의 1/2 이하인 것
⑥ 기타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2) 원형홍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형태의 홍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홍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등급 항목	대 미			중 미			세 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 직경 (mm)	6 이상			4 ~ 6			4 미만		
② 길이 (mm)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③ 균열 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		제한 없음
④ 내공 · 내백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⑤ 수분(%)	15.0 이하								
⑥ 야생삼의 혼입률 (%)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⑦ 파쇄삼(%)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10미만	30미만	제한없음

(5) 그 밖의 홍삼류(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및 파쇄홍삼)

구분 항목	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① 외관 및성상	머리, 몸통, 다리, 색택 또는 표피가 1등(천삼), 2등(지삼) 또는 3등(양삼)에 미달되는 것 중 내백이 몸통의 1/2 이하인 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내공·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피·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 두께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 수분	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태극삼

(1) 직삼

구분		1 등(천삼)	2 등(지삼)	3 등(양삼)
항목				
①외관 및 성상	머리 및 몸통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 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 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통이 건설 하고 균형정도가 등 외 표준품 이상일 것
	다리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 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 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 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 형인 것
②수분(%)		15.0 이하		
③피해삼 혼입율(%)		5 이하	10 이하	제한 없음
④색 택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 색	담황색·백황색 또는 담갈 색	
⑤표 피		황피·백피가 전체 면적의 1 /4 이하일 것	황피·백피가 전체 면적의 1/ 3 이하일 것	
⑥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	10 이하	
⑦기 타		내용조작이 충실하여 고유의 향취를 가진 것		

(2) 원형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형태의 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
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태극미삼류

등급 항목	대 미			중 미			세 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직경 (mm)	6 이상			4 이상 6 미만			4 미만		
②길이 (mm)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③ 균열 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수분 (%)	15.0 이하								

(5) 그 밖의 태극삼류(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및 파쇄태극삼)

구분 항목	절삼태극삼	절편 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① 외관 및 성상	1등(천삼) 또는 2등 (지삼)에 미달하는 삼의 중간 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고유의 색상과 향 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 한 후 10mesh(1900 μm)의 체 위에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 한 후 20mesh(864μm) 의 체 위에 남는	20mesh(864 μm)의 체를 통 과한 후 120mesh(11 7μm)의 체 위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것이 90% 이상일 것	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두께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 수분	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 백삼

(1) 본삼류(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직삼, 피부곡삼, 피부반곡삼)

구분		1 등(천삼)	2 등(지삼)	3 등(양삼)
항목				
①외관 및 성상	머리 및 몸체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체가 건설하고 균형정도가 등외 표준품 이상일 것
	다리	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 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②수분(%)		15.0 이하		
③피해삼 혼입율(%)		5 이하	10 이하	제한 없음
④머리탈락삼 혼입율(%)		없을 것	10 이내	제한 없음
⑤색택		유백색, 난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광택이 있어야 한다.		제한 없음
⑥기타		○직삼의 경우 부착미삼은 2mm 이상이어야 한다.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은피삼은 제외한다.		제한 없음

※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2) 백미삼류((피)대미, (피)중미, 세미)

등급 항목	(피) 대 미		
	1등	2등	3등
①직경 (mm)	6 이상		
②길이 (mm)	20 이상		
③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피해삼 (%)	10 이하	30 이하	
⑤색택	○대미 : 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 색 ○피대미 : 담황색	○대미 : 유백색·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대미 : 담황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	○대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 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⑦수분 (%)	15.0 이하		

등급 항목	(피) 중 미		
	1등	2등	3등
①직경 (mm)	4 ~ 6		
②길이 (mm)	20 이상		
③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없 음
④피해삼 (%)	10 이하	30 이하	
⑤색택	○중미:유백색 · 난백색 또는 담황 색 ○피중미: 담황색	○중미:유백색 · 난백색 또는 담황색 ○피중미:담황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	○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 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한다.	○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 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⑦수분 (%)	15.0 이하		

등급 항목	세 미		
	1등	2등	3등
①직경(mm)	4 미만		
②길이(mm)	제한 없음		
③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피해삼 (%)	10 이하	30 이하	
⑤색택	담황색 또는 난백색	담황색·난백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	이형삼의 혼입율이 5.0% 미만일 것	이형삼의 혼입율이 10.0% 미만일 것	이형삼의 혼입율이 50.0% 미만일 것
⑦절삼(%)	0.1 이하	0.3 이하	0.5 이하
⑧수분(%)	15.0 이하		

(3) 그 밖의 백삼류(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및 파쇄백삼)

구분 항목	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
① 외관 및	1등(천삼) 또는	고유의 색상과	고유의 색상과	고유의 색상과	고유의 색상과

성상	2등(지삼)에 미달하는 것으로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향취를 가진 것	향취를 가진 것	향취를 가진 것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20mesh(864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두께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 수분	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4) 잡삼류

항목 등급	1등	2등	3등
①성상	인삼 고유의 향취를 가질 것		
②피해삼(%)	10 이하	30 이하	제한 없음
③색택	담황색 또는 담갈색	담황색 또는 담갈색	
④기타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⑤수분(%)	15.0 이하		

(5) 원형백삼

등급 항목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①성상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등외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②수분(%)	15.0 이하		
③피해삼(%)	5 이하	10 이하	제한없음
④색택	담황색 또는 담갈색	담황색·담갈색 또는 백황색	담황색·담갈색 또는 백황색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태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라) 흑삼

(1) 직삼

등급		1등(천삼)	2등(지삼)	3등(양삼)
항목				
① 체 형	머리	몸통 굵기와 비슷하며 건설한 것 길이 3.5cm 이상		
	몸통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	균열과 흠집이 전체표면 적의 4분의 1 이하	제한 없음
	다리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 이와 같거나 작은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있 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 통길 이와 같거나 작은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 수분(%)		15.0 이하		
③ 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 하되, 머리 밑 10mm 이 하부분을 절단 시 내 공·내백의 직경이 0.5 mm 이하인 것으로 길이 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 되, 뇌두 밑 10mm 이하부 분을 절단 시 내공·내백 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의 직경이 몸통직경의 1/2 이하인 것
④ 선택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⑤ 표피		윤기있는 선택으로 갈 피·황피가 전체표면적 의 1/4 이하인 것	윤기있는 선택으로 갈 피·황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	갈피·황피 또는 옹피 등 이 전체표면적의 1/2 이 하인 것
⑥ 그 밖의 사항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2) 원형흑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기타 형태의 흑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선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흑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등급 항목	대미			중미			세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 직경(mm)	6 이상			4 ~ 6			4 미만		
② 길이(mm)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③ 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	제한 없음	
④ 내공 · 내백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⑤ 수분(%)	15.0 이하								
⑥ 이형삼의 혼입률(%)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⑦ 피해삼(%)	10 미만	30 미만	제한 없음	10 미만	30 미만	제한 없음	10 미만	30 미만	제한 없음

(5) 그 밖의 흑삼류(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및 파쇄흑삼)

구분 항목	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① 외관 및 성상	머리, 몸통, 다리, 색택 또는 표피가 1등(천삼), 2등(지삼) 또는 3등(양삼)에 미달하는 것으로 내백이 몸통의 1/2 이하인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내공·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피·균열과 절단 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 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 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10mesh(1900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 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20mesh(864 μ 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 m)의 체 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일 것
③ 절단 두께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④ 수분	15.0% 이하				

※ 비고: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최저표준품

최저표준품이란 삼종별로 최저한도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장검사

가) 일반기준

- (1) 포장재는 제품의 보관·운반과정에서 흡습 및 충격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 (2) 포장재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결함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 이어야 한다.
- (3) 단위포장은 이를 해체한 후 임의로 재포장할 수 없도록 봉합되어 있어야 한다.
- (4) 포장용기의 내용물충만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5) 홍삼본삼·태극본삼·흑삼본삼 및 백삼본삼의 경우(수입 인삼류중 인삼제품 및 인삼제제 의 약품의 원료용을 제외한다) 각각 다음의 지별 또는 편급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홍삼본삼·흑삼본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37.5g	개체당 중량(g)
크기별	지 별	편급별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특대편	5	9	9	5	2	—	—	60 이상
	10	14	14	7	—	—	—	36 이상
	15	19	19	10	—	—	—	27 이상
대편	20	28	28	14	7	—	—	18 이상
	30	38	38	19	10	5	—	13 이상
	40	48	48	24	12	6	3	11 이상
중편	50	58	58	29	15	8	—	9 이상
	60	68	68	34	17	9	—	8 이상
	70	78	78	39	20	10	—	7 이상
소편	소지		70 ~ 100	40 ~ 50	21 ~ 25	11 ~ 13	—	6 이상
	편급외		101 이상	51 이상	26 이상	14 이상		6 미만

※ 비교: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지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포장의 지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 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가 37.5g 이하이거나 개체당 중량이 60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 포장을 할 수 있다.

다) 태극본삼, 백삼본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개체당중량(g)
크기별	편급별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특대편	5	10	5	3		47.1 이상
	8	16	8	4		35.1 ~ 47.0
	10	20	10	5		25.1 ~ 35.0
대 편	15	30	15	8	4	17.6 ~ 25.0
	20	40	20	10	5	13.6 ~ 17.5
	25	50	25	13	6	11.1 ~ 13.5
중 편	30	60	30	15	8	8.8 ~ 11.0
	40	80	40	20	10	6.8 ~ 8.7
	50	100	50	25	13	5.6 ~ 6.7
소 편	60	120	60	30	15	4.6 ~ 5.5
	75	150	75	38	19	3.6 ~ 4.5
	편급외	151이상	76이상	39이상	20이상	3.6 미만

※ 비교 :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크기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포장의 크기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으며, 포장단위가 75g 이하이거나 개체당 중량이 47.1g 이상인 특대편의 경우 낱개 포장을 할 수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삼의 지별·등급별 구분 및 별도의 포장단위는 필요한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 표시검사

- 가) 품목, 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미삼을 제외한다), 등급, 중량, 뿌리수·크기(본삼만 해당한다), 제조자(수검자)의 주소·상호·성명, 지리적표시 등록번호(지리적표시 등록자만 해당한다),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및 검사자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 나)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 다)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의 여부
- 라)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
- 마)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불합격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및 백삼검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제조함으로써 상위등급 또는 해당규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는 검사등급판정을 보류하고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제조를 하게 할 수 있다.

- 가)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 나) 변질되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
- 다)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고유색상을 변색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의 유해물질로 처리한 것
- 라) 인위적 조작을 하여 내용성분이 유실된 것
- 마) 충해가 발생한 것

3. 인삼류의 검사방법

홍삼, 태극삼, 흑삼, 백삼은 전수 또는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관능검사[사람의 오감(五感)에 의해 인삼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방법 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